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 2007. 03. 01 개정 2013. 02.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목표)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학생들이 입사기간 중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의식과 예절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인성을 도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조직 및 행정) ① 기숙사의 산하 관리조직은 건물단위(00원00관)또는 남.녀 기숙사 단위로 한다. (개정 2013. 2. 28)

② 기숙사에는 입사생의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사감을 둘수 있으며 사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2. 28)

③ 사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기숙사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실을 설치하며 사감을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13. 2. 28)

제4조 (사감) 사감은 총장의 명을 받아 조교를 지휘감독하고 학생의 상담지도활동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생선발 및 생활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관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치기구 운영 및 활동) ① 사생의 자치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② 자치기구는 입사생중 선발된 각 층의 층장 및 전체를 총괄하는 사생장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③ 사생회의 활동은 질서있고 명량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제5조 (사생선발절차) 선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사 신청서 제출(정확한 시기는 별도 공고)
2. 사생선발 심사(학생지도위원회)
3. 선발자 통보(본인 및 해당 학부 또는 학과)
4. 기숙사비 납부(정확한 시기 별도 공고)
5. 입사등록(본인)

제6조 (입사자격 및 제한) ① 본 기숙사의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생중 입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생선발 심사를 통과한자로 선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 기숙사의 생활 수칙(사생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2점이상 도달한자
- 3) 건강상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자(건강진단서상 결격사유자 및 전염성질환자 포함)
- 4) 기타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제7조 (구비서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원서(기숙사생활안내실에서 배부) 1부
2.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종합병원발행) 1부
3. 반명함판 사진 2매

제8조 (입사기간) ① 사생의 입사허가기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매학기 종료 시 퇴사하여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단체의 기숙사 이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퇴사 등) 사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퇴사 처분한다

1.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기숙사 납부금 체납자
3. 제6조②항의 규정에 해당한 사실이 발생한 자
- 4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0조 (납부금 등) ① 사생이 납부할 기숙사비는 입사비, 자율비, 식비, 관리비로 하며, 납부금액과 납입일은 따로 정한다.

② 기숙사비 납부금 반환은 “사생수칙”에 준하여 환불하며, 환불기간은 수업일수 1/2선까지 환불한다.

③ 방학 중 공공성이 있는 행사나 산학협력, 대학홍보, 학문발전등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및 워크샵, 세미나, 학회, 연수, 훈련, 수학목적에 관한 용도일 경우 총장 승인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절차 및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부대시설) 상기 운영방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한다.

1. 상담실 : 학생생활에 대한 제반 상담
2. 생활안내실 : 생활지도안내, 일반 기숙사 행정업무
3. 식당, 매점 및 휴게실 : 식사 및 각종 간식과 잡화 및 휴게공간의 제공
4. 세미나실 : 각종 세미나 개최, 독서, 야간학습, 비디오 및 영화상영 등
5. 세탁실,빨래방 겸 다림질실 : 세탁 및 건조, 다림질 등을 위한 공간제공
6. 중앙홀 : 각 층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 TV시청
7. 독서실 : 독서 및 학습을 위한 공간제공
8. 경동휘트니스클럽 : 체력단련 및 여과시간활용
9. 당구장, 탁구장 : 여가시간활용 및 사생들간 친목도모

제12조 (기타사항) ① 기숙사의 행정사항은 학생복지처장 또는 캠퍼스 본부장을 경유한다. (개정 2013. 2. 28)

②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생수칙) 본교 기숙사의 사생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